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48
----------	-------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의자 : 이종배 · 김승수 · 송석준

김미애 · 구자근 · 김기웅

진종오 · 김용태 · 이만희

김위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의 100분 10 이상의 비용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양 당사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의 연동 적용대상을 원재료에만 한정하고 있어 원재료 수준으로 에너지비용 또는 운송비용 또는 용수비용이 많은 업종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거래상 지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우며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요청을 거절하기도 어려워 실질적으로 연동제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

용을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항 및 제3조제4항제4호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항 중 “주요 원재료”를 “주요 공급원가”로, “사용되는 원재료로서”를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 에너지, 운송, 용수 비용으로서”로, “원재료를”을 “각 비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중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를 “주요 공급원가가”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주요 원재료”를 “주요 공급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원사업자와”를 “수급사업자의 서면요청으로 원사업자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p>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1. · 2. (생 략)</p> <p>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u>주요 원재료</u>,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4. (생 략)</p> <p>③ (생 략)</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p> <p>1. ~ 3. (생 략)</p> <p>4. <u>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u></p>	<p>-----.</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p> <p>----- <u>주요 공급원가</u></p> <p>-----</p> <p>-----</p> <p>-----</p> <p>-----</p> <p>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수급사업자의 서면요청으로 원사업자와-----</u></p> <p>-----</p>
---	---

⑤ ~ ⑫ (생략)

-----  
⑤ ~ ⑫ (현행과 같음)